

「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확보 단독주택 등에 대한 수요자시설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2)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규모(안 제5조, 제6조)
- 3)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, 보조금 교부방법
(안 제7조 ~ 제9조)
- 4)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(안 제12조 ~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관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하여

수요자시설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

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군민의 에너지복지 증진 및

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“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”은

『지방자치법』 제13조제2항제4호 “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¹⁾(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)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,

『도시가스사업법』 제19조3에서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어,

상위법 저촉사항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1)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○ 검토결과,

지역의 여건상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따라

보급률이 7.5%로 저조한 형국인 만큼 공급 확대를 위한

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

적법성에 있어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,

입안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○ 그리고,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

추진 경과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공유하며,

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